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4224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986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422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섭, 이지혜

변론종결 2022. 9. 29.

판결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가소38825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경기 안성시 D 및 E 토지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도, 소외 F이 위 지장물의 소유자임을 참칭하여 2008년경 안성시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18,850,000원(이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9. 12.경 F으로부터 위 D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F이 위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내지 치료 등을 구한 인천지방법원 2018나64248호 사건에 F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참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위 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986호 사건) 변론기일에서 F은 그가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F으로부터 위 D 토지를 매수하고 위 인천지방법원 2018나64248호 사건에 F의 소송승계인으로 그 소송에 참가한 피고들은 F이 부당이득한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D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F이 위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내지 치료 등을 구한 인천지방법원 2018나64248호 사건에 F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참가하여 그 판결을 받은 일이

있으며, 또한 위 소송의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986호 사건) 변론기일에서 F이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직접 위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하여 이를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장물 보상금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무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조윤신, 판사 조미옥